학생준칙내규 5-2-3

규정번호 5-2-3
제정일자 1989.3.1
최근개정 2018.8.27
개정차수 5차 개정
관리부서 학생복지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우리대학 설립정신에 따라 학문진리를 탐구하는 건전한 학생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 스스로가 지켜야 할 제규범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 생 증

제2조(휴대의무) ① 입학절차를 마친 신입생·복학생·편입학생은 우리대학 학생임을 증명하는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③ 학생증은 우리대학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매 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학생증에 등록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제한)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학생신분을 표하기 위한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변조할 수 없다.

제4조(권리정지)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수험을 금지하며 학술정보원(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에의 출입을 금지한다.(개정 2018.08.27)

제5조(분실신고)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학생지원처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간행물 인쇄 및 배포

제6조(허가) 학칙 제35조에 의한 학생단체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기·부정기적인 간행물을 인쇄 또는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전교단위의 학생간행물
2. 학과단위의 학생간행물
3. 써클단위의 학생간행물
4. 기타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간행물

제7조(절차) ① 학생간행물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1. 간행물 발간허가원 1부
2. 편집계획서 및 예산서 1부
3. 지도교수 의견서 1부
4. 간행목적에 부합되는 근거서류 1부

② 전교단위의 간행물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선정한 지도교수의 사전지도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학과단위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발간허가) 학생간행물의 발간허가는 총장의 간행물 발간허가서에 의한다.

제9조(배포허가) 학생간행물이 인쇄되어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에게 배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지원처장의 검인을 필한 후 배포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① 모든 학생간행물의 경비는 해당 단체 혹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산집행은 지도교수의 허가를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간행물 발간지도) 간행물의 편집·인쇄·예산집행·배포 등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제4장 학생홍보물 제작 및 게시

제12조(적용범위) 학생홍보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각종 광고공고·기타 게시물과 현수막을 말한다.

1. 전교생·학과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예술·체육행사에 관한 홍보물
2. 학과·학생단체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
3. 우리대학에 등록되지 않은 다수 학생들의 친목행사 (고교동문회·지방학우회)의 홍보물
4. 기타 타인에게 특정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학생이 제작하는 홍보물

제13조(홍보물 게시 허가) ① 모든 홍보물 (현수막·각종공고·광고 전단)은 학생지원처장의 허가와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외부단체의 홍보물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술·예술·체육에 관한 행사 및 취업홍보 기타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특히,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홍보물일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홍보물 게시 제한) 대학의 환경 및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홍보물 게시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전체 행사에 관한 현수막은 1매에 한한다.
2.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시물은 10매 이내에 한한다.
3. 학과 또는 학생단체 대상의 게시물은 4매 이내에 한한다.
4. 외부단체의 행사 및 기타 홍보에 관한 게시물은 2매 이내에 한한다.
5. 홍보물 게시는 지정된 장소에 행사시작 1주일 전부터 게시하며 행사종료 다음 날까지 게시물

을 철거해야 한다.

제15조(책임) 이 내규를 위반한 홍보물은 지체없이 회수 또는 철거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70> <생략>

<71> 학생준칙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①, 제8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72> - <102> <생략>

부 칙(직제규정) <2013.7.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28> <생략>

<29> 학생준칙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 13조의 “학생처, 학생처장”을 “학생지원처,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30>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